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. 12 선고 2020가단1445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망 B의 상속인 C

2. 망 B의 상속인 D

3. 망 B의 상속인 E

4. 망 B의 상속인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8. 10. 15. 접수 제8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주관

별지